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서 등을 열람 및 출력할 시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의 수수료 부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함(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4.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지와 같음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8